

지제역 반도체벨리 제일풍경채 | 2BL |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공고일: 2023년 6월 5일]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분주택 운영 안내**
1. 건분주택 운영권인 안내
- 건분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분주택 일반 관람은 방문 기간 내 입장이 가능하며, 사비어 건분주택(http://pt-feil.co.kr)으로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분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건분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660-2234)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분주택 내 대표번호(☎1660-223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서 참고자료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서 접수자모집공고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05 인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외의 판정기준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22742(2023.06.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2BL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127세대 총 1,152세대 및 부대복합시설특별공급 507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9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7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7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차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중 우선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232		01 084.9556A 02 084.9484B 03 103.8578B	84A 84B 103		84.9556	26.070	111.026	56.3356	167.3482	55.8533	819	81	81	147	24	73	406	413	30
						84.9484	26.9477	111.8961	56.3308	168.2269	55.8485	162	16	16	29	4	14	79	83	6
						103.8578	31.3112	135.1690	68.8699	204.0389	68.2803	171	-	17	-	22	149	6		
합계						1,152	97	114	176	33	87	507	645	42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합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인적차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건분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팔뚝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나, 자세한 사항은 건분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동별 (리안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1개월 이내	1회(10%) 24.02.08	2회(10%) 24.06.10	3회(10%) 24.10.10	4회(10%) 25.02.10	5회(10%) 25.06.10	6회(10%) 25.10.10	잔금 (30%) 입주지정일						
84A	202동 1, 3, 5호 / 203동 1, 3, 5호 / 204동 1, 2, 3, 5호 / 206동 1, 3, 5호 / 207동 1, 3, 5호 / 208동 1, 2, 3, 5호 / 210동 1, 3, 5호 / 211동 1, 3, 5호 / 212동 1, 2, 3, 5호	819	1층	15	179,045,500	253,954,500	-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2층	30	184,007,500	260,992,500	-	445,000,000	10,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3층	30	189,796,500	269,203,500	-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4층	30	193,931,500	275,068,500	-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기존층				714	197,653,000	280,347,000	-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84B	202동 2호 / 203동 2호 / 206동 2호 / 207동 2호 / 210동 2호 / 211동 2호	162	1층	6	179,045,500	253,954,500	-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2층	6	184,007,500	260,992,500	-	445,000,000	10,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3층	6	189,796,500	269,203,500	-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4층	6	193,931,500	275,068,500	-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기존층				138	197,653,000	280,347,000	-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103	201동 1, 2호 / 205동 1, 2호 / 209동 1, 2호	171	1층	3	203,112,000	288,080,000	28,808,000	520,000,000	10,000,000	4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2층	6	209,752,200	297,498,000	29,749,800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3층	6	216,392,400	306,916,000	30,691,600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4층	6	221,079,600	313,564,000	31,356,400	566,000,000	10,000,000	4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기존층				150	224,985,600	319,104,000	31,910,400	576,000,000	10,000,000	4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72,800,000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나,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 및 인세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분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약식표기)	84A	84B	103	합계
정기복무 재대군인	16	3	-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6	3	-	19
중소기업 근로자	16	3	-	19
장애인	경기도	7	2	9
	서울특별시	5	1	6
	인천광역시	5	1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41	8	9
	기타지역 거주자(50%)	40	8	8
	합계	406	79	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 요건 등 우선순위에 따른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공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 - 저가주택에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공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공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 남부 보훈청 복지과(031-259-1783)
정기복무 재대군인	「재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기복무 재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02-2225-637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031-201-6942)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시청 장애인 자원지원과(02-2133-7462)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 복지과(031-8008-4324)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032-440-2968)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생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 태어나 임양자녀도 포함함.
- 태어나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일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7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내혼인)이고 기존 또는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 증명서 상 임양인고임)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배아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1. 군복무중(적군인 제외)에서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장자격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나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3. 유자녀 부부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생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며,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임업인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정세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의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 (단, 지제역 반도체벨리 제1일풍경채 2BL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는 관계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자격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년도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유무지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유무에 없는 경우를 포함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도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름.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2022.1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양육)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가능함.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2022.1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6.15(목) (청약Home 인터넷: 09:00~17:30)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1순위		2023.06.16(금) 09:00~17:30
일반공급	2순위	2023.06.19(월) 09:00~17:30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분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분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09: